
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성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2402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3. 9.

발 의 자 : 김성찬 · 이명수 · 김석기

홍문표 · 박성중 · 박덕흠

경대수 · 박맹우 · 정인화

이종명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18조에서는 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개업자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은 2014년 「공인중개사법」으로 개정되었음에도 이전 제명을 인용하고 있어 법해석에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을 「공인중개사법」으로 개정하고자 함(안 제18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공인중개사법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) ① (생 략)	제18조(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「 <u>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</u> 」에 따른 중개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.	② 「 <u>공인중개사법</u> 」-----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